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1. 3.>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제2조의3제2호 관련)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비고
곡물 도정업	10611	도정시설의 동력이 52.5kW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곡물 제분업	10612	제분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고, 제분시설의 용적이 3m ³ 미만이며, 동력이 7.5kW 미만이고, 처리능력이 시간당 100kg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619	제조과정에서 물과 액상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빵튀기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떡류 제조업	10711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빵류 제조업	10712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10713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30	스프 등 첨가물을 제조하지 않고, 면류(라면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장류 제조업	10743	산분해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커피 가공업	10791	제조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볶은 커피, 분쇄 커피 제조공장만 해당한다.
차류 가공업	10792	건조된 상태의 차류를 생산하거나 단순 소분 또는 포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삼식품 제조업	10795	1차 가공된 홍삼을 이용하여 농축 또는 추출 등 2차 가공하는 경우 또는 농축된 인삼액을 단순 희석하여 포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299	물리적·화학적 처리공정이 없는 단순 조립인 경우만 해당한다.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10	세척 및 도장 작업이 없는 간판을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